

2026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연장공고

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(R&D)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·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·거래, 기술사업화, 기술나눔 분야의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*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6-450호의 연장 공고로서, 최초 공고일('26.6.29)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·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7. 29.(수)

산업통상부장관

1. 신청(추천)자격

□ 신청(추천)자격

-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「정부포상업무지침」 및 「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」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포상 분야		내역
기술이전·거래		■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(3년 이상)로 공공·민간분야에서 기술이전·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
기술사업화	공공	■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(3년 이상)로 공공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
	민간	■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(3년 이상)로 민간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추진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
기술나눔		■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(3년 이상)로 기술나눔 제도 추진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자

□ 재포상 금지기간(기준 : 기존 수여일~포상추천일('26. 9. 18 예정))

-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산업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및 단체
 - * 단, 공공기관,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

2.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

□ 신청분야

포상 분야		포상 대상
기술이전·거래		■ 기술이전·거래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
기술 사업화	공공	■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
	민간	■ 사업화 추진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
기술나눔		■ 기술나눔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

* 해당 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,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

□ 포상규모 및 내역 (장관상 26점,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5점)

포상 분야		포상종류 및 규모			
		장관표창		원장표창	
		개인	단체	개인	단체
기술이전·거래		4	1	1	-
기술사업화	공공	5	2	1	1
	민간	5	5	1	1
기술나눔		2	2	-	-
합 계		16	10	3	2

* 포상금 지급 없음, 포상 규모는 신청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3.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

□ 선정절차

구분	내용	일정
신청접수	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	6~7월
기본요건 확인	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	7~8월
서류심사	제출 서류 점검	8월
포상심의위원회	신청서류에 대한 정량·정성 심의 실시	9월 초
심의결과 상신	산업통상부에 서열명부 제출	9월 중
공적심사	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	10월
결과 확정	포상대상자 확정	11월
시상식	표창장 수여	12월

*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

□ 심사기준

○ 포상분야별 평가기준

포상 분야		평가항목 (배점)
기술이전·거래		■ 개인(단체)역량 및 전문성(30), 관련 업무 수행실적(30), 사후관리 현황(10), 파급효과(20), 기타(10), 가산점(5)
기술 사업 화	공공	■ 개인(단체)역량 및 전문성(20), 관련 업무 수행실적(30), 기반조성 활동(20), 파급효과(20), 기타(10), 가산점(5)
	민간	■ 개인(단체)역량 및 전문성(30), 관련 활동 실적(30), 파급효과(30), 기타(10), 가산점(5)
기술나눔		■ 개인(단체) 역량 및 전문성(30), 관련 업무 수행실적(30), 파급효과(30), 기타(10), 가산점(5)

*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

*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[첨부1] 참고

4. 신청 및 접수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6. 7. 29.(수) ~ 2026. 8. 19(수) 18시까지

* 접수마감시간 이후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(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)

□ 신청서류

○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
*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: www.kiat.or.kr (2026년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공고문 검색)

○ 제출서류 목록

구분	제출서류		작성양식	비고
개인	1	신청서	서식1	hwp
	2	공적조서	서식2	hwp
	3	정부포상 동의서	서식3	hwp
	4	포상 추천서	서식4	hwp
	5	신청자 요약정보	서식5	xlsx
	6	재직/경력증명서	-	공적기간 증빙용도
	7	회계법인의 감사의견	-	"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" 제2조에 따른 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
	8	공적내용 증빙서류	-	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
단체	1	신청서	서식1	hwp
	2	공적조서	서식2	hwp
	3	정부포상 동의서	서식3	hwp
	4	신청자 요약정보	서식5	xlsx
	5	사업자등록증	-	
	6	회계법인의 감사의견	-	"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" 제2조에 따른 회사에 한하여 제출
	7	공적내용 증빙서류	-	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
	8	최근 3년간 재무제표	-	

- 모든 제출서류(인쇄본)는 1부씩 제출(원본 1부)

-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
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

*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, 시상식 일정 등 추후 개별 안내예정

□ 접수방법

- 제출서류는 **우편**(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) 접수 후 **이메일 제출**
 - *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(.hwp) 형태로 이메일 제출(서명본은 PDF도 제출)
- 접수 및 문의처

주소	(06152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,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
연락처	02-6009-3612 / 한소영 연구원
이메일	hsy@kiat.or.kr (우편 접수 후 이메일 제출)

5.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

□ 자격기준

1. 개인표창 : 표창추천일 기준, 수공기간 3년 이상
 - * 단, 창안상,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 - 가. 공무원표창 : 실 근무기간 3년 이상
 - *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**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**(청원경찰, 별정우체국 포함)
 - *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 등은 제외
 - 나. 국민표창 :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
2. 단체표창 :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

□ 추천제한

1. 공무원표창(공적상·창안상·협조상에 적용)
 - * 공공기관,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**공직유관단체의 임.직원도 적용**
 - 1) 표창추천일 기준, **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** 하지 않는 자
 - * 창안상,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 - 2) 휴직중인 자
 - 3)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,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(정부 포상지침 중 3.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), 수사 중인 자

- 4)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
- 5)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6)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7)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
※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(재직공무원)

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
 - 다만, 주요비위(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

※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(퇴직공무원)

-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,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
 - 다만, 주요비위(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
 -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

2. 국민표창(공적상·창안상·협조상에 적용)

- 1)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)
- 2)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(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
- 3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 -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 - 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4)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
5)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그 임원

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
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개인)

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7)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
8)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9)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
*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(정부포상지침 중 2.일반국민 포상과 동일)

3. 단체표창(공적상·협조상에 적용)

1) 표창추천일 기준,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
* 다만,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
2)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3)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민간단체에만 적용)

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4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민간단체에만 적용)

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
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
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5)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

6)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)

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
7)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단체)

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

채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채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채불사업주

* 포상추천일 이전 채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채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8)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9) 기타 사회적 물의

※ 산재명단공표, 불공정행위, 임금채불사업주 조회기관

· 산재명단공표: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(☎ 044 - 202 - 8813)

* 고용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사전정보 공표 목록 → 산재예방/산재보상 →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(pdf 파일)를 참고해 자체 확인

· 불공정행위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(☎ 044 - 200 - 4131)

* 공정위 홈페이지(www.ftc.go.kr) → 심결/법령 → 법위반사실조회 → 사업장명 검색

· 임금채불사업주: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(☎ 044 - 202 - 7538)

* 고용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채불사업주 명단공개 →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

※ 회계법인의 감사의견

·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“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” 부분 확인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

· NTIS(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) 사이트(www.ntis.go.kr)에 접속, 사업과제 → 제재정보란에서 확인

□ 기타,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2026년 정부포상업무지침」 및 「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」에 준함

<첨부> 1.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

2. 제8차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목록(본문 별첨)

<양식> 1.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식(개인부문)

2.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식(단체부문)

포상 분야		항목(배점)	평가기준
기술이전·거래		개인(단체)역량 및 전문성(30)	- 기술이전·거래 업무종사 기간 -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- 기술이전·사업화 관련 업무 실적
		관련 업무 수행실적(30)	- 기술이전·거래 실적 - 기술이전·거래 성사 금액 및 사업화규모 - 기술이전·사업화 관련 혁신/협력 사례 - 기술이전·거래 신뢰성 기반조성 - 신청인(단체)의 주된 역할 - 대표적인 기술이전·거래 사례 * 추진절차, 주요내용, 거래금액, 신청인의 역할(기여도)
		사후관리현황(10)	- 기술이전·거래 성사 기술관리 및 후속조치 - 기술이전·거래 기술의 사업화(제품화)
		파급효과(20)	- 매출증가, 고용창출, 기술혁신 등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
		기타(10)	- 향후 비전 및 계획
		가산점(5)	-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정책과제와 후보 공적의 연관성 및 우수성(최대 5점 적용) * 가산점 산출기준 : 정책 추진과제와 후보공적 간 연관성·우수성 기준(0점(무관), 3점(유관), 5점(우수)) ** 가산점 포함 총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시, 100점으로 인정
기술사업화	공공	개인(단체)역량 및 전문성(20)	- 기술사업화 업무종사 기간 -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- 총 수행한 지원정책(지원업무) 현황
		관련 업무 수행실적(30)	- 기술사업화 관련분야별 주요 업무내용 - 신청인(단체)의 주된 역할 -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/협력 사례
		기반조성활동(20)	- 분야별 정책수립·집행 기여도 - 시장활성화 및 기반조성 노력 - 수혜기업 지원 및 사후관리 노력
		파급효과(20)	-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(일자리 창출, 기술혁신 등)
		기타(10)	- 향후 비전 및 계획
		가산점(5)	-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정책과제와 후보 공적의 연관성 및 우수성(최대 5점 적용) * 가산점 산출기준 : 정책 추진과제와 후보공적 간 연관성·우수성 기준(0점(무관), 3점(유관), 5점(우수)) ** 가산점 포함 총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시, 100점으로 인정

민간	개인(단체)역량 및 전문성(30)	- 기술사업화 업무종사 기간 -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 - 기술이전·사업화 관련 업무 실적
	관련 활동 실적(30)	- 기술개발, 추가 기술개발 등 관련 업무실적 - 상품화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·추진 실적 -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/협력 사례 - 신청인(단체)의 주된 역할 -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사례 * 추진배경 및 절차, 주요내용, 거래금액, 기술사업화 성공 또는 실패요인
	파급효과(30)	-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(매출 및 일자리 창출, 기술혁신 등)
	기타(10)	- 향후 비전 및 계획
	가산점(5)	-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정책과제와 후보 공적의 연관성 및 우수성(최대 5점 적용) * 가산점 산출기준 : 정책 추진과제와 후보공적 간 연관성·우수성 기준(0점(무관), 3점(유관), 5점(우수)) ** 가산점 포함 총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시, 100점으로 인정
기술나눔	개인(단체) 역량 및 전문성(30)	- 기술나눔 추진 또는 성과창출 관련 기여부문(역할) - 기술나눔 관련 업무종사 또는 사업추진 기간 -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경험
	관련 업무 수행실적(30)	- 기술나눔 추진 또는 성과창출을 위한 추진내용 - 신청인(단체)의 주된 역할 - 기술나눔 관련 혁신/협력 사례
	파급효과(30)	-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기여 수준 - 기술나눔 추진 기여에 따른 경제·사회적 창출효과 - 기술나눔 관련 사업화 추진에 따른 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(매출 및 일자리 창출, 기술혁신 등)
	기타(10)	- 향후 비전 및 계획
	가산점(5)	-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정책과제와 후보 공적의 연관성 및 우수성(최대 5점 적용) * 가산점 산출기준 : 정책 추진과제와 후보공적 간 연관성·우수성 기준(0점(무관), 3점(유관), 5점(우수)) ** 가산점 포함 총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시, 100점으로 인정

추진과제

[전략 1] R&D 전 과정에 사업화 성과 지향 강화

- ① 시장·성과 중심의 R&D 기획·평가
- ② 사업화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 선정
- ③ 수요·환경변화를 반영한 과제수행 여건 마련
- ④ 공공연 기술성과 관리역량 강화

[전략 2] 선도자 육성을 위한 기술거래 촉진

- ① 기술이전·거래 제도 개선
- ② Lab to Market 지원 강화

[전략 3] 도전적 사업화·스케일업 집중 지원

- ① 사업화 R&D 지원방식 개편·확산
- ② 촘촘한 사업화 투자 지원
- ③ 공공조달 활용 사업화 지원 강화
- ④ 국제 공동 R&D·해외 사업화 지원 확대
- ⑤ 딥테크·핵심산업 집중투자 추진

[전략 4] 공공연의 첨단기술 창업 요람化

- ① 공공연 창업의 제도적 기반 확충
- ② 기술지주회사 규제개선
- ③ 공공연 창업사업화 추진체계 효율화

[전략 5] 공공연의 사업화 투자 유인·역량 확충

- ① 공공연 기술사업화 지원역량 강화
- ② 기술사업화 투자유인 강화

[전략 6] 민간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

- ① 기술거래 인프라 확충 및 중개역량 강화
- ② 기술사업화 지원 기반 강화

[전략 7] 온·오프라인 협업 플랫폼 구축

- ① 기술사업화 온라인 서비스·연계 강화
- ② 오프라인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

* 추진과제와 후보공적의 연관성 및 실적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가산점 최대 5점 부여가능(평가기준 참고)

포상 지원자 제출서류 및 자료 작성요령

모든 자료는 원본 1부씩 우편 제출 후 이메일 접수(hsy@kiat.or.kr)

* 우편 접수처 : (06152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, 한국기술센터 7층 사업화전략실

□ 개인부문

제출 서류	작성 방법
1. 신청서(1부) [서식 1] HWP, PDF(서명본)	- 후보자/ 인사·감사부서 확인자/대표자 친필 서명 혹은 날인 - 신청인 : 결과안내 등을 위해 주요 연락처 제출바람(신청자와 후보자가 동일할 수 있음)
2. 공적조서(1부) [서식 2] HWP	- 소속업체(기관) : 기업(단체)명 기재 - 공적기간 : 전·현 직장 근무기간 합산 표기(제출일 기준) - 공적요지 : 70자 내외 준수,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-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와 공적 연관성 표시 - 공적 상세기술서(3p 이내 작성) - 공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
3. 포상동의서(1부) [서식 3] HWP, PDF(서명본)	후보자 동의서 작성 (친필 서명 혹은 날인)
4. 포상 추천서(1부) [서식 4] HWP, PDF(서명본)	- 추천인은 소속기업 또는 소속단체 대표자 - 후보자 본인이 대표일 경우, 소속기업(기관) 이외 추천가능
5. 신청자 요약정보 [서식 5] xlsx	엑셀 양식에 따라 신청자 관련 정보 작성)
6. 재직(경력)증명서	- 이·전직의 경우, 각 직장별로 경력증명서 첨부 '총 재직기간'은 [서식3]공적조서의 '공적기간'과 일치
7. 회계법인의 감사의견	"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" 제2조에 따른 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
8. 공적증빙자료	-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제출 - 제반 공적증빙 자료는 일련순에 따라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함([폴더명] 증빙자료_기관_이름)

* 해당 작성요령 이외, 제출서류 [서식]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□ 단체부문

제출 서류	작성 방법
1. 신청서(1부) [서식 1] HWP, PDF(서명본)	▪ 업체(기관)명 : 기관/기업명 작성하고, 부서단위로 작성하지 않음 ▪ 공적기간 : 해당 기관의 기술사업화 관련 공적 수행기간 ▪ 대표자 친필 서명 혹은 날인
2. 공적조서(1부) [서식 2] HWP	▪ 소속업체(기관) : 기업(단체)명 기재 ▪ 설립일 : 해당 기관/기업 설립일 ▪ 공적요지 : 70자 내외 준수,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-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와 공적 연관성 표시 ▪ 공적 상세기술서(3p 이내 작성) ▪ 공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
3. 포상동의서(1부) [서식 3] HWP, PDF(서명본)	▪ 대표자 동의서 작성 (친필 서명 혹은 날인)
4. 신청자 요약정보 [서식 5] xlsx	▪ 엑셀 양식에 따라 신청기관(기업) 관련 정보 작성
5. 사업자등록증	▪ 해당 기관(기업) 사업자등록증 제출
6. 회계법인의 감사의견	▪ "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" 제2조에 따른 회사에 한하여 제출
7. 공적증빙자료	▪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제출 ▪ 제반 공적증빙 자료는 일련순에 따라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함([폴더명] 증빙자료_기관)
8. 재무제표	▪ 매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제출(23년, 24년, 25년)

* 해당 작성요령 이외, 제출서류 [서식]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<양식 1> 신청서 - 개인부문

서식1	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	개인부문
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

포상분야 (택1)	☐ 기술이전·거래 ☐ 기술사업화(공공) ☐ 기술사업화(민간) ☐ 기술나눔
--------------	---

유 공 자	성 명	(한글)	연락처(휴대폰)	
		(영문)	E-Mail	
	주민등록번호	-	나이	(만 세)
	직장주소	(우편번호)		
	소속(직업)	직위(직급)	근무기간(공적기간)	
			년 월 일(총 개월)	

※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공적기간 계산, 직장을 옮겼더라도 같은 분야에 종사했으면 공적기간에 합산하여 작성

소 속 기 관	업체(기관)명		대표자명	
	사업자등록번호		법인등록번호	
	산재보험관리번호		홈페이지주소	
	설립일자		자본금	백만원
	주생산품목		업 종	
	주 소	(우편번호)		

신청 담당자	성명		E-Mail	
	유선전화		휴대전화	
	소속/직위		팩스	

상기 내용으로 2026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을 신청하며,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붙임 : 1. 공적조서, 2. 포상동의서, 3. 포상추천서, 4. 공적증빙자료 5. 요약정보

2026 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(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) 확인자 (인)

신청업체(기관) 대표자 (인)

산업통상부 장관 귀하

사진	성명	(한글)	(한문)	(영문)
	소속업체(기관)		직위	
	주민등록번호	-	근무기간(공적기간)	년 월 일
	과거 포상기록 (2년)	☐ 훈장 ☐ 포장 ☐ 표창	년 월 일	발급처
		☐ 훈장 ☐ 포장 ☐ 표창	년 월 일	발급처

학 력 사 항	기간	학교명	전공	학위
	년 월 ~ 년 월			
	년 월 ~ 년 월			
	년 월 ~ 년 월			

경 력 사 항	기간	근무처	부서	직위
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
사업장 현황 (기업체 해당)	사업장명	사업장 소재지(도로명 주소 표기)

공적요지(70자 이내, 6하원칙에 의거)

◆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연관성

(후보 공적의 연관성, 우수성은 공적조서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)

R&D 과정 사업화 성과지향	기술거래 촉진	도전적 사업화 및 스케일업	공공연 첨단기술 창업	공공연 기술사업화 투자	기술거래 민간전문기관 활성화	기술사업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
○						

* 제 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참고하여, 후보공적 해당 시 표시(중복 가능)

◆ 후보 공적요지(70자 이내, 6하원칙 의거)

-

공적 상세기술서 (3페이지 이내, 개조식으로 작성)

- ◆ 포상 해당 분야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되, 소속기관(단체)의 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를 작성하여 주십시오.
- ◆ 최근 3개년 공적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.

※ 과거포상기록 해당사항 ☐ 표시

※ 과거 포상기록 등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「상훈법」 및 「정부포상업무지침」 등 관련 법령 및 규정, 지침 등에 따라 추천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산재번호 관련, 추천대상이 대표자일 경우 단위사업장 모두 기재, 임원 이하는 해당 사업장만 기재

※ 최근 2년 이내 타 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체 산재번호도 기재

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(장관표창/원장표창 후보자용)

□ 포상 후보자

성명			
소속(주소)		직위(급)	

위 본인은 기술사업화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장관표창/원장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/원장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2. 산업통상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/원장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6 . . .

성명

(서명)

〈 개인정보 제공 동의 〉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/원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 여부 확인,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
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적내용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(외국인의 경우)
3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표창기록부는 영구,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

< 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/ 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>

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추천서

포상분야 (택1)	☐ 기술이전·거래 ☐ 기술사업화(공공) ☐ 기술사업화(민간) ☐ 기술나눔
--------------	---

소속기관	업체(기관)명		대표자명	
	사업자등록번호		설립일자	
	주생산품목		업종	

유공자	성명	(한글)	연락처(휴대폰)	
		(영문)	E-Mail	
	주민등록번호	-	나이	(만 세)
	직장주소	(우편번호)		
	소속(직업)	직위(직급)	근무기간(공적기간)	
			년 월 일(총 개월)	

※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공적기간 계산, 직장을 옮겼더라도 같은 분야에 종사했으면 공적기간에 합산하여 작성

추천내용	
※ 공적개요(추천 동기를 간결·명료하게 작성)	

위와 같이 2026년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.

2026 년 월 일

업체(기관)명:

대표자:

(인)

산업통상부 장관 귀하

<양식 2> 신청서 - 단체부문

서식1

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

단체부문

포상분야	☐ 기술이전·거래 ☐ 기술사업화(공공) ☐ 기술사업화(민간) ☐ 기술나눔
------	---

소속기관	업체(기관)명		대표자명	
	사업자등록번호		법인등록번호	
	산재보험성립번호		홈페이지주소	
	공적기간		년 월 일(총 개월)	자본금 백만원
	주생산품목		업 종	
	소재지	본사	(우편번호)	
		공장	(우편번호)	

기업(기관)구분	☐ 대학 ☐ 기업(대기업/중견/중소/벤처) ☐ 연구소 ☐ 기타			
구분(단위:백만원)	매출액	수출액	연구개발비	비고
2025년				
2024년				
2023년				

담당자	성명		E-Mail	
	전화		휴대전화	
	소속/직위		팩스	

상기 내용으로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.
붙임 : 1. 공적조서, 2. 포상동의서, 3. 공적증빙자료 4. 요약정보

2026 년 월 일

업체(기관)명 대표자 (인)

산업통상부 장관 귀하

업체(기관)명			규모	☐ 대기업 ☐ 중견기업 ☐ 중소기업 ☐ 공공기관 ☐ 기타단체()	
설립일	년	월	일	종업원수	명
자산	백만원		자본금	백만원	
기업인정현황 (복수 √)	☐ 벤처 인증 ☐ 이노비즈 인증 ☐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 ☐ 혁신제품 지정 ☐ 기타 ()				
기업부설연구소	☐ 유 ☐ 무 (인증번호:)				
연구개발인력	총 명 (박사 : 명, 석사 : 명, 학사 이하 : 명)				
업종					
경영현황 (단위:백만원)	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	당해연도(예상)
	매출액				
	수출액				
	자기자본비율	%	%	%	%
	총자본회전율	%	%	%	%
	영업이익률	%	%	%	%
	매출대비 R&D 투자비율	%	%	%	%

공적요지(70자 이내, 6하원칙에 의거)

- ◆ 제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연관성
(후보 공적의 연관성, 우수성은 공적조서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)

R&D 과정 사업화 성과지향	기술거래 촉진	도전적 사업화 및 스케일업	공공연 첨단기술 창업	공공연 기술사업화 투자	기술거래 민간전문기관 활성화	기술사업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
○						

* 제 8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참고하여, 후보공적 해당 시 표시(중복 가능)

- ◆ 후보 공적요지(70자 이내, 6하원칙 의거)

-

공적 상세기술서(3페이지 이내, 개조식으로 작성)

- ◆ 최근 3년 이내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작성하되,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추진실적은 가능한 정량화 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. (3P 이내 작성)

* [기술이전·거래 분야 신청의 경우] 하기 양식에 따른 실적치를 필수로 작성

구분		2023년	2024년	2025년	3년간(23~25년) 총계	3년간(23~25년) 평균
기술이전 건수	실적치	000건	000건	000건	0,000건	000건
	전년대비 증감	-	000건(00.0%)	000건(00.0%)		
기술이전 총수입	실적치	000백만원	000백만원	000백만원	0,000백만원	000백만원
	전년대비 증감	-	백만원(00.0%)	백만원(00.0%)		

- * [전(술) 분야 공통(선택)] 공적 관련 구체적인 우수사례
(우수사례는 공적 ‘상세기술서 제한분량(3페이지)’ 이외로 작성·제시 가능)

※기업의 경우 규모에 해당사항 ☐표시

※기재한 사항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공적으로 인정됨

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(장관표창/원장표창 후보자용)

□ 포상 후보자

업체(기관)명	
주 소	

위 본인은 기술사업화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장관표창/원장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/원장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2. 산업통상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/원장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6 . . .

대표자 성명

(서명)

〈 개인정보 제공 동의 〉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/원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,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
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적내용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(외국인의 경우)
3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표창기록부는 영구,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

< 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/ 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>